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18.

도시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장호섭 의원 등 6명(박종길, 박왕규, 박정환, 고명욱, 정순옥)
- 발의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상정 및 의결: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 9. 18.)

2. 제안이유

-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스쿨존으로 관리되는 반면, 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는 상대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중·고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보행권 보장,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별도의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제안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6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5. 9. 3.~9. 15.):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최윤미)

- 본 개정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부합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관리되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통학로 환경 개선이 미흡한 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